

직제 규정

제정 1997. 03. 01. 개정 1999. 03. 01.
 개정 2007. 03. 01. 개정 2012. 10. 31.
 개정 2013. 08. 20. 개정 2013. 12. 23.
 전문개정 2014. 03. 31. 개정 2014. 07. 23.
 개정 2014. 10. 01. 개정 2015. 04. 07.
 개정 2015. 09. 01. 개정 2015. 12. 07.
 개정 2016. 01. 08. 개정 2016. 02. 04.
 개정 2016. 04. 29. 개정 2016. 08. 26.
 개정 2016. 12. 29. 개정 2017. 05. 01.
 개정 2017. 06. 26. 개정 2017. 08. 28.
 개정 2017. 12. 26. 개정 2018. 02. 07.
 개정 2018. 06. 25. 개정 2018. 08. 27.
 개정 2018. 10. 29. 개정 2018. 12. 10.
 개정 2019. 02. 11. 개정 2019. 04. 29.
 개정 2019. 06. 2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경동대학교 법인정관 제79조 내지 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본교의 직제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기타 관계령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조직도 및 사무분장)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직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12. 07., 2016. 02. 04, 2016. 08. 26., 2017. 05. 01., 2017. 06. 26., 2017. 12. 26., 2018. 08. 27., 2018. 10. 29., 2018. 12. 10., 2019. 02. 11., 2019. 04. 29, 2019. 06. 24.)

제2장 총장 · 부총장 (개정 2016. 12. 29.)

제4조 (총장) ①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② 총장은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 이사장이 임명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③ 총장은 대학발전계획 추진 또는 평가 등 대학 운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사업단을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수 업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7. 06. 26.)

④ 특별사업단의 명칭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06. 26.)

제5조 (부총장) ①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부총장, 산학부총장, 국제부총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8. 06. 25., 2018. 08. 27.)

②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총장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총장 직무 대행자를 정한다.

③ 교학부총장은 기획조정처, 교무처, 대학교육혁신원, 학생복지처, 입학처, 산학취업처, 대외협력홍보처, 사무처(총무팀(과), 관리팀(과)), 전산정보원, 온사람교양교육대학, 중앙도서관을 관할하고, 국제부총장은 국제교육처를 관할하며, 산학부총장은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단, 평생교육대학을 관할한다.(신설 2019. 06. 24.)

제6조 (삭제 2016. 12. 29.)

제3장 학 부

제7조 (대학) ① 본교에 학칙에 정한 대학, 학부, 학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07.)

② 대학에 학장, 학부(과)에 학부(과)장을 둘 수 있으며, 학장, 학부(과)장은 교원으로 보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07.)

③ 학장, 학부(과)장은 해당 대학, 학부(과)의 교무와 학생지도 및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 12. 07.)

④ 대학에는 행정팀(과), 학부(과)에는 학부(과)실을 둘 수 있으며, 행정팀(과)장은 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보하고, 학부(과)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실습)조교를 임명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07., 2016. 01. 08., 2017. 05. 01.)

제4장 총장직속기구 및 대학본부

제8조 (총장직속기구) ① 총장직속기구로 비서실, 감사팀, 해외취업본부, 직무역량개발원, 학생군사교육단을 두고, 해외취업본부에 미주지역취업센터, 아시아지역취업센터, Internship College를 두며, 직무역량개발원에는 English College, Japanese College, Professional College, Hi-Po College를 둔다. (개정 2016. 08. 26., 2018. 06. 25., 2018. 08. 27., 2018. 10. 29., 2018. 12. 10., 2019. 02. 11.)

② 비서실장, 감사팀장, 해외취업본부장, 미주지역취업센터장, 아시아지역취업센터장, Internship College팀장, 직무역량개발원장, English College팀장, Japanese College팀장, Professional College팀장, Hi-Po College팀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며, 학생군사교육단장은 육군본부에서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01. 08., 2016. 08. 26., 2017. 05. 01., 2018. 06. 25., 2018. 08. 27., 2018. 10. 29., 2018. 12. 10., 2019. 02. 11.)

③ 제2항의 보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군사교육단장의 보직 임기는 육군본부의 규정에 따른다.

④ 실장, 팀장, 본부장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6. 08. 26., 2018. 06. 25., 2018. 12. 10.)

⑤ 제1항의 해외취업본부에는 부분부장, 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부분부장, 센터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 06. 25. 개정 2018. 08. 27.)

제9조 (대학본부) ① 대학본부에 미래전략처, 기획조정처, 교무처, 대학교육혁신원, 학생복지처, 입학처, 산학취업처, 대외협력홍보처, 국제교육처, 사무처,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단, 전산정보원을 둔다. (개정 2015. 04. 07., 2015. 12. 07., 2016. 04. 29., 2016. 08. 26., 2016. 12. 29., 2017. 06. 26., 2018. 08. 27., 2019. 06. 24.)

② 미래전략처장,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대학교육혁신원장, 학생복지처장, 입학처장, 산학취업처

장, 대외협력홍보처장, 국제교육처장, 산학협력단장, 창업지원단장, 전산정보원장은 교원으로, 사무처장은 직원으로 보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04. 07., 2015. 09. 01., 2015. 12. 07., 2016. 04. 29., 2016. 08. 26., 2016. 12. 29., 2017. 06. 26., 2018. 08. 27.)

③ 제1항 각 처, 단, 원에는 부처장, 부단장,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 부단장, 부원장은 교원(사무처는 직원)으로 보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09. 01., 2015. 12. 07., 2016. 01. 08., 2016. 04. 29., 2019. 06. 24.)

④ 처장, 단장,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5. 09. 01., 2015. 12. 07., 2016. 04. 29.)

제10조 (미래전략처) ① 미래전략처에 미래전략실, 4차산업융합아카데미를 두고, 미래전략실 내 교직원인사팀(과), 미래전략지원팀(과)을 두며 실장, 센터장, 팀(과)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01. 08., 2016. 04. 29., 2017. 05. 01., 2017. 06. 26.)

제11조 (기획조정처) 기획조정처에 기획조정실, 평가분석실, 교육만족도관리센터를 두고, 기획조정실 내 기획조정팀(과), 예산팀(과)을 두며, 평가분석실 내 평가관리팀(과)을 두고, 실장, 센터장, 팀(과)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01. 08., 2017. 05. 01., 2018. 08. 27., 2019. 06. 24.)

제12조 (교무처) ① 교무처에 교무지원실, 교직교육센터를 두고, 교무지원실 내 교무팀(과), 수업학적팀(과)을 두며, 실장, 센터장, 팀(과)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04. 07., 2016. 01. 08., 2017. 05. 01., 2018. 08. 27.)

② 각 캠퍼스에 교무처를 두며, 교무처에는 교직교육센터를 둘 수 있고, 센터장, 팀(과)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04. 29. 개정 2017. 05. 01., 2017. 12. 26., 2018. 08. 27.)

제12조의2 (대학교육혁신원) ① 대학교육혁신원에 교육·혁신품질센터, 교수학습센터, e-learning센터, 학생상담센터를 두고, 센터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 08. 27.)

② 각 캠퍼스에 대학교육혁신원을 두며, 대학교육혁신원에는 교수학습센터, 학생상담센터를 두고, 센터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 08. 27.)

제12조의3 (학생복지처) ① 학생복지처에 학생복지지원실, 장애·소수집단학생지원센터를 두고, 학생복지지원실에는 학생지원팀(과), 장학복지팀(과)을 두며, 실장, 센터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 08. 27.)

② 각 캠퍼스 학생복지처를 두고, 학생복지처에 장애·소수집단학생지원센터를 두며, 센터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 08. 27.)

제13조 (입학처) ① 입학처에 입학관리실을 두고, 실장, 센터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입학관리실장은 입학사정관실장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07, 2016. 08. 26, 2016. 12. 29., 2017. 05. 01., 2019. 06. 24.)

② 입학관리실 내 입학기획팀(과), 입학관리팀(과), 입학사정관실을 두며, 팀(과)장은 직원으로 보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07., 2016. 08. 26., 2017. 05. 01.)

제14조 (산학취업처) ① 산학취업처에 취업지원실, Co-op지원실을 두며, 취업지원실 내 취업지원팀(과), Co-op지원실 내 산학지원팀(과)을 두고 실장, 팀(과)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04. 07., 2015. 12. 07., 2016. 01. 08., 2017. 05. 01.,

2018. 08. 27.)

② 산학취업처에 현장실습지원센터, 취업사관교육센터를 두고, 센터장 및 팀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01., 2015. 04. 07., 2015. 12. 07., 2017. 06. 26., 2018. 06. 25., 2018. 12. 10.)

③ 각 캠퍼스 산학취업처를 두고, 산학취업처에 현장실습지원센터, 취업사관교육센터를 두며, 센터장은 교원으로 보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04. 29. 개정 2017. 05. 01., 2018. 08. 27.)

제15조 (대외협력홍보처) ① 대외협력홍보처에 대외협력실, 홍보센터, 사회공헌센터를 두고, 대외협력실에는 대외협력팀(과)를 두며, 실장, 센터장, 팀(과)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 08. 27., 개정 2019. 06. 24.)

② 각 캠퍼스 대외협력홍보처에 사회공헌센터를 두며, 센터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 08. 27., 개정 2019. 06. 24.)

제16조 (국제교육처) ① 국제교육처에 국제교육실, 국제교육원,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를 두며, 실장, 원장, 센터장은 교원으로 보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04. 07., 2015. 09. 01., 2015. 12. 07., 2016. 01. 08., 2017. 05. 01., 2018. 12. 10.)

② 국제교육실 내 국제교육팀(과)을 두며, 팀(과)장은 직원으로 보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04. 07., 2015. 09. 01., 2015. 12. 07., 2017. 05. 01., 2017. 06. 26.)

③ (삭제 2015. 04. 07.)

제17조 (사무처) 사무처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 내 총무팀(과), 재정팀(과), 관리팀(과)을 두고 국장, 팀(과)장은 직원으로 보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07., 2017. 05. 01.)

제18조 (삭제 2016. 04. 29.)

제19조 (산학협력단) ① 산학협력단에 종합행정팀(과), 연구지원팀(과), 사업팀(과), 기업지원센터, 사회경제지원센터를 두고, 각 캠퍼스에 산학협력단(분단), 3D프린팅창작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두며, 분단장, 센터장, 팀(과)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04. 07., 2015. 09. 01., 2016. 04. 29., 2017. 05. 01., 2017. 06. 26., 2018. 08. 27., 2019. 04. 29.)

②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19조2 (창업지원단) ① 창업지원단에 창업보육센터, 창업교육센터를 두고, 각 캠퍼스에 창업지원단을 두고, 창업지원단에 창업교육센터를 두며, 단장 및 센터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 06. 26. 개정 2018. 08. 27.)

② 창업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7. 06. 26.)

제20조 (전산정보원) 전산정보원에 전산정보실을 두며 전산정보실 내 전산정보팀(과)을 두고 실장, 팀(과)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07., 2016. 01. 08., 2017. 05. 01.)

제5장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등

제21조 (온사람교양교육대학) 온사람교양교육대학에 교양교육센터, 滋洋리더십아카데미를 두고, 센터

장은 교원으로 보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02. 04. 개정 2017. 05. 01.. 2017. 06. 26.)

제22조 (평생교육대학) ① 캠퍼스별 평생교육대학을 두고, 평생교육대학 내 평생교육원을 두며, 원장은 교원으로 보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02. 04., 개정 2017. 08. 28.)

②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 02. 04.)

제23조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본교에 학칙에 정한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두며 그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 02. 04.)

제24조(도서관) 캠퍼스별 도서관을 두고, 관장은 교원으로 보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06. 2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해당 보직에 임명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해당 보직에 임명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해당 보직에 임명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해당 보직에 임명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시행과 동시에 Image & Communications연구소, 경영경제연구소, 지역건강관리연구소, 지역정책연구소, 노인재활연구소, 한국어문화교육연구소, 한국치료특수교육연구소, 글로벌보건개발연구소, 간호커뮤니케이션연구소, 의생명연구소, 도시건축디자인연구소, 정보보안연구소, 체육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별표 1> 교육편제 중 간호대학 및 의료생명보건대학의 개편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해당 보직에 임명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명)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부서의 명칭은 개정된 부서명칭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해당 보직에 임명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학 조직 (개정 2016. 04. 29., 2016. 08. 26. 2016. 12. 29., 2017. 05. 01., 2017. 06. 26., 2017. 08. 28., 2017. 12. 26., 2018. 02. 07., 2018. 06. 25., 2018. 08. 27., 2018. 10. 29., 2018. 12. 10., 2019. 02. 11 2019. 04. 29., 2019. 06. 24.)



